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가합5223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204671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가합522366 판결

전 문

원고A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변호사 B

피고C

변론 종결 2016. 5. 19.

판결 선고 2016. 6.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10. 1. 접수 제4377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딸인 피고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10. 1. 접수 제43772호로 2014.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2014. 10. 1.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아들인 D은 2014. 6. 17.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5534호로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이하 '이 사건 성년후견개시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5. 3. 27. 원고가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원고의 재산관리를 위한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 B을, 원고의 신상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성년후견인으로 D을 선임한다는 심판을 하였고, 이 사건 성년후견개시심판은 2015. 4.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3, 4, 7,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로 인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1)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만 80세가 넘는 고령이었고, 2012. 3.경부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오던 상태였는데, 강북삼성병원에서 발급한 원고에 대한 2014. 10. 13.자 진단서에는 주상병명이 '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with late onset'(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기 진단으로 2012. 3. 19. 이후 현재까지 추적 진료 중인 환자로 향후 정기적인 투약 안정이 필요함, 측두엽 기능의 장애로 기억장애가 심하고 언어기능과 전두엽, 판단력 기능에 장애가 있다. 서울 인지기능 검사상(2014. 2. 13.) 언어기억 5.0 ~ 6.8%, 비언어적 기억 7.8 ~ 23.6%, 이름대기 0.06%, 전두엽 기능 0.01% ~ 22.3%, 그림그리기 51.8%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음'이라는 치료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 2) D은 2014. 6.경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성년후견개시심판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정신감정 및 면접조사 등이 한창 진행되던 와중에 이루어졌다.
- 3) 이 사건 성년후견개시심판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정신감정을 촉탁 받은 국립서울병원장은, '일상생활 평가' 부분에서 원고가 적절한 대화 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규칙적인 통원·약물복용,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대중교통이나 일반 공공시설의 이용 등을 위하여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전일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정신상태 평가' 부분에서 시간에 대한 지남력, 단기기억 등록, 회상에 관한 기억력이 손상되었으며, 간단한 물품구매는 익숙한 곳에서 가능하나 실행기능이 요구되는 물품구매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국립서울병원에서 2014. 10. 5.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 결과 MMSE는 18/30, CDR은 1, IADL은 22/45였고, 위와 같은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되었으며, 종합적으로 '고도의 기능이 요구되는 행위 등에서 기억력 및 기타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적절하지 못한 판단을 보일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가 시간 경과에 따라 악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현재의 인지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자신의 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판단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자신의 사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에 필요한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현재 의사결정과 사무처리 등에서 타인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이라는 취지로 평가받았다.

4) 강북삼성병원의 위 진단서 발급일, 국립서울병원장의 원고에 대한 검사일은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과 매우 근접한 시점이어서 위와 같은 진단 및 검사 당시 원고의 상태와 이 사건 증여계약일 당시 원고의 상태는 거의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3. 27. 원고의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성년후견개시심판도 이루어졌다.

5) 원고는 2014. 11. 10. D에게 "이 사건 증여는 사기라 무효임, 며느리한테 맡겨 놓은 인감도장, 은행 금고에 있는 가게문서를 분실했다고 속여 증여계약을 했고, 나의 지병 기억력, 인지, 판단능력 저하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는 딸의 소행에 화가 나고 다 반환받고 싶다, 가업을 이으려고 노력하는 D에게 남대문 가게를 넘겨주고 싶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7호증)를 작성해 준 바가 있다. 그런데 반면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경에는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위 진술서의 내용과 달리 원고가 자의로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었고, D이 원고 모르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를 취하하기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위 녹취록에 기재된 대화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준 것이 맞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한 적이 있는지", "만약 D이 원고 이름으로 피고에게 그러한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면, 그 소송을 없앨(취하할) 생각이 있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는데, 피고 소송대리인이 간단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질문을 수차례 반복하여 하는데도 그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과 맞지 않는 대답을 하는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모습을 보였고, 위 대화내용은 원고가 앞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과 일관성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437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함중식

판사도정원

판사김신영

별지